

## 독자의 소리

### 소득세 감면 계속 연장되어야 한다

변 삼 근

(육계업, 전주시 팔복동 2가 686)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국민의 의무요 의무를 이행 할 때 몇몇한 국민이 될 것입니다. 나는 5년째 육계사육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2개년간은 전반적으로 호황이어서 1회 100수 규모의 양계업을 시작하였고 지금은 1회 1000수 규모로 키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약 3개년간의 계속되었던 불황은 수많은 육계업자를 마치 장마로 쓸린 산길의 논밭처럼 만들었고 용하게도 빗사이로 피해다닌 사람만 목숨 질기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금년들어 몇달간 경기가 좋아지자 둑에 힘을 주고 다니는 육계업자도 커다란 빗구멍을 다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금을 낼만한 소득이 없었습니다.

제품된 사료에 의존하고 있는 양계업은 그 경영규모의 70% 이상이 사료값인 것은 정확한 수치를 컴퓨터에 넣을 것도 없이 양계업자의 상식이 되어있고 사료 대금에는 원가의 10%가 부가가치세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은 사료회사가 아니라 바로 양계업자가 내

고 있습니다. 어찌 세금을 내지 않는 비열한 국민이 되고 싶겠습니까?

국가의 경제를 요리하는 머리좋은 분들께서는 이숲우화에 나오는 알 낳는 털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은 과거에 한국은 농본국가요 그후는 농공병진을 외치다가 지금은 국제무역 경제에서 재미를 보겠다는 인상입니다. 다수의 국민이 돈 많이 벌어 잘 사는 것을 양계업자인들 배가 아파할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화속의 암탉같은 존재로 만족하렵니다.

몇번의 적자운영에도 한번만 시세가 맞으면 일어서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거꾸러진 동업자들을 딛고 일어서려면 수입쇠고기가 나타나 별 볼일 없이 되었지요. 국가의 부를 키우고 선진국가로서의 궁지를 만끽하려는 여러 사람들의 지혜에 암탉같은 우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진국가의 특징중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인구의 10%미만이요 이들의 경영 소득은 재투자되어 국가경제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런 국가들은 암탉같은 적은 수의 농민을 얼마나 알뜰하게 보호 하였습니까? 미국은 잉여농산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락된 난가에 대처하여 광화문지하도에서 산란업자가 찐 계란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듯이 그들도 남는 농산물을 새나 쪼아먹으라고 산속에 뿐혔으며 국가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살찐 새를 마음껏 사냥하고 즐기라고 기도하였습니까?

양계업자는 넓은 토지도 필요없읍니다. 계란이나 닭고기는 국민건강의 활동 영양소인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양계업자가 망해서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살아남는 양계업자만이라도 선진국가로서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국부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하필 소득세로 목을 졸라야하겠습니까? 내가 벌

어 내가 먹어버리고 소득세 한푼 못내는 국  
가경제적인 면의 실업자로부터 이에 참여하는  
당당한 국민이 될 때까지 소득세는 아주 면  
제하여 주는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 타당하고 공정한 소득세 납부률

정재덕  
(신일부화장 대표)

우선 세금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  
인데, 세액이 소득 금액에 대하여 일정하고  
공평하며 타당한 것이라면 세액의 증대는 곧  
소득의 증대이니까 오히려 기뻐할 일이다. 그  
러나, 양계를 비롯한 축산업의 소득금액 결정은  
타산업의 소득 발생 과정과는 현저한 차  
이가 있다. 쉽게 손해와 이익에 관계없이 투  
자(사료매동)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어떤  
경우는 투자에 반비례하여 소득이 결정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축산업의 소득 발생과정  
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며 세무 실무자도 납득이 가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런 과  
정을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도록 기장을 하  
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리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 걸로 안다. 세무사 사무소  
에서 양계관계 대리기장은 꺼려하고 있다. 까  
다롭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아무  
튼 내야할 세금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소득에 대한 세금이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81년말로 끝나는 양축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은 종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루  
었고 오히려 축산 생산물의 과잉으로 생산감  
축을 장려해 오기도 했기 때문이다. 축산을  
장려한다는 측면의 소득세 감면혜택이라면 이  
미 끝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양  
축가의 소득이 타산업의 소득과 맞먹게 되어  
감면혜택이 필요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오  
히려 조세감면 혜택을 시작했을 당시보다, 더  
욱 힘겨운 상태라 생각된다. 소득세의 감면  
혜택을 종료하는 대신 사료내지는 약품에 부  
가된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원하고 싶다. 사실  
양축가가 부가가치세의 최종부담을 한다는  
것은 과중한 짐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리고 소득세도 현재 세법상 어쩔 도리야 없겠  
지만 사료값의 일정액을 부담케 한다든지 하  
는 기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좀  
더 합리적인 세액결정과 납부방법을 양계인  
내지는 우리 축산인이 더 연구 검토하여 그  
얻어진 결론이 세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생기기를 희망한다. 생각컨데 양축인들 마음  
에 조금도 세금액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타당하고 공정하게 납부하고  
싶다는 바램일 것이다. 그러기에 하고 많은  
직업을 마다하고 말 못하는 가축과 씨름하는  
것이 아닌가? 경기도에서 양계하시는 목사  
님 한분이 전해 주신 이야기가 생각난다. 처  
음 납세고지서를 받고 무척 기뻤단다. 아, 나  
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처지에 이르렀구나 생  
각하니 감회롭기 까지 하셨단다. 아무튼 이  
런 마음으로 납세고지서를 대할 수 있는 날  
이 속히 오기를 기대한다.

##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는 당연 그러나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시급

배 성 황  
(삼화농원 총무)

축산처럼 노력에 상응한 댓가가 보장되지도 못하는 불안한 직업도 드물 것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안정이라는 구실로 정확한 수급량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무작정 수입을 해서 업계를 혼미 속에 빠뜨리고, 생산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 지속되는 상태가 되어도 수수방관만 했던 것이 최근의 축산정책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물론 경기가 좋을 때도 있으나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 계속되는 상태에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 올 호경기를 은근히 기대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에 대한 회임기간이 길고 영속성이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적자를 거듭하면서도 생업이라고 유지하여 왔습니다. 전업계가 파산되다시피 한 80년도의 채란계 경기였으나 외형의 11%가 소득으로 잔주되어 파세되었었습니다. 보조를 받아야 할 입장인데도 기장을 하지 못하고, 아픈 곳을 아프다고 말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터무니 없는 세금을 물어야 하니 얼마나 엄청나게 큰 모순입니까? 혹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기장은 가능할지 모르나 몇몇 전업 내지 기업축산을 제외하고는 축산기장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잔일들에 물려 살고 있어서 기장할 시간이나

축산업자의 기장능력, 또 증빙서류 확보에 타업종으로서는 이해 못할 농업 특유의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또 질병에 대한 불안이 상재해 있고 피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읍니다. 예를 들어 소위 EDS피해가 있었을 경우 양계를 이해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산란율을 고의로 줄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려울 뿐더러 불안요소 또한 많은 업종이므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는 당연하지만 당분간은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감면 기간을 연장해 주길 바랍니다. 특용작물 재배농가나 과수원에 별도의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듯이 축산업도 같은 차원에서 생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과세가 물가피하라면 소득을 기장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과세기준의 하한선을 지금보다 훨씬 높여 기업축산에만 기장과세를 행하고 그 이하는 누진과세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사료에 부과를 하므로써 징수나 납세를 편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 등입니다. 아울든 작년 채란제의 경우처럼 계사가 텅텅비어 사회문제로 되고, 견디다 못하여 야간도주하고 탄광이나 도시의 노동자로 전락하는데도 외형의 11%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엄청난 모순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